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0회 제2차 정례회(2025. 12. 9.)

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운영위원회

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5-153
----------	--------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의회사무국)

나. 제 출 일 : 2025. 11. 12.

다. 회 부 일 : 2025. 11. 18.

2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다.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

3.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

가. 세 입

○ 해당 없음.

나. 세 출

○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55억 4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3,110만 7천원 대비 7,297만 5천원, 1.34% 증액된 규모임.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	금액	증감률
총 계	5,504,082	5,431,107	72,975	1.34%
정책사업	2,107,696	2,122,913	△15,217	△0.72%
재무활동	0	0	0	0.00%
행정운영경비	3,396,386	3,308,194	88,192	2.67%

다.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

(단위:천원)

부문 · 정책사업 · 단위사업	예 산 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증감	
			금액	증감률
총 계	5,504,082	5,431,107	72,975	1.34%
일반공공행정	2,107,696	2,122,913	△15,217	△0.72%
입법및선거관리	2,107,696	2,122,913	△15,217	△0.72%
선진의회상 정립	2,107,696	2,122,913	△15,217	△0.72%
의정활동 지원	1,959,712	2,016,985	△57,273	△2.84%
의정활동 홍보	147,984	105,928	42,056	39.70%
기타	3,396,386	3,308,194	88,192	2.67%
기타	3,396,386	3,308,194	88,192	2.67%
행정운영경비(구의회사무국)	3,396,386	3,308,194	88,192	2.67%
인력운영비(구의회사무국)	3,226,035	3,128,416	97,619	3.12%
기본경비(구의회사무국)	170,351	179,778	△9,427	△5.24%

-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‘선진의회상 정립’ 예산은 21억 769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△0.72%, △1,521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, 행정운영경비는 33억 9,63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.67%, 8,8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, 재무활동은 없음.

라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

(단위:천원)

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감	증감률
구의회사무국	5,504,082	5,431,107	72,975	1.34%
선진의회상 정립	2,107,696	2,122,913	△15,217	△0.72%
의정활동 지원	1,959,712	2,016,985	△57,273	△2.84%
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	1,854,572	1,915,835	△61,263	△3.20%
인건비	20,283	20,228	55	0.27%
일반운영비	157,922	154,787	3,135	2.03%
여비	56,750	51,350	5,400	10.52%
업무추진비	48,694	48,694	0	0.00%
직무수행경비	24,000	23,475	525	2.24%
의회비	1,456,291	1,410,976	45,315	3.21%
일반보전금	3,300	6,600	△3,300	△50.00%
포상금	3,200	3,200	0	0.00%
연금부담금등	72,000	72,000	0	0.00%

(단위:천 원)

정책 · 단위(회계) · 세부사업 · 편성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감	증감률
시설비및부대비	5,000	41,960	△36,960	△88.08%
자산취득비	7,132	82,565	△75,433	△91.36%
국외 선진의회 연수	105,140	101,150	3,990	3.94%
일반운영비	1,400	1,400	0	0.00%
의회비	103,740	99,750	3,990	4.00%
의정활동 홍보	147,984	105,928	42,056	39.70%
의정활동 언론 홍보	38,500	33,000	5,500	16.67%
자치단체등이전	38,500	33,000	5,500	16.67%
의정활동 홍보 내실화	109,484	72,928	36,556	50.13%
일반운영비	102,485	68,128	34,357	50.43%
업무추진비	4,800	4,800	0	0.00%
일반보전금	1,000	0	1,000	순증
자산취득비	1,199	0	1,199	순증
행정운영경비(구의회사무국)	3,396,386	3,308,194	88,192	2.67%
인력운영비(구의회사무국)	3,226,035	3,128,416	97,619	3.12%
인력운영비	3,226,035	3,128,416	97,619	3.12%
인건비	3,226,035	3,128,416	97,619	3.12%
기본경비(구의회사무국)	170,351	179,778	△9,427	△5.24%
기본경비	170,351	179,778	△9,427	△5.24%
일반운영비	121,850	117,777	4,073	3.46%
여비	24,300	37,800	△13,500	△35.71%
업무추진비	15,801	15,801	0	0.00%
직무수행경비	8,400	8,400	0	0.00%

- 주요 증액 사업을 예산서 편성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[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]

-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 : 의원 수첩 제작, 방문 기념품, 행동강령자문위원회 등 수당, 경하기 사용료, 제10대 전반기 의장 경하기, 근조기 제작, 제10대 의회개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구매
- 여비(국제화여비) : 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 : 1,833만 9천 원(17.85%)
- 의회비(의정운영공통경비) : (의회 운영업무추진비) 교섭단체 대표의원 : 1,152만 원(10.97%)
- 의회비(의정운영공통경비) : 교섭단체 대표의원 : 1,200만 원(9.93%)

(의원국민연금부담금)	173만 4천 원(8.72%)
(의원국민건강부담금)	112만 6천 원(4.46%)
- 자산취득비(자산및물품취득비) : 회의용 태블릿PC	110만원(순증)

[의정활동 언론 홍보]

- 자치단체등이전(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) : 언론사 광고료	550만원(16.67%)
---	---------------

[의정활동 홍보내실화]

-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 : 신문구독료, 제10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, SPOT 광고 제작 · 송출비, 의회청사 간판 제작비, 촬영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 (공공운영비) : 의회 홈페이지 서버 OS 최신화	3,221만 8천 원(62.11%) 213만 9천 원(13.16%)
--	--

- 일반보전금(기타보상금) : 제10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	100만원(순증)
- 자산취득비(자산및물품취득비) : 의정활동 홍보 태블릿PC 구입	119만 9천 원(순증)

[국외 선진의회 연수]

- 의회비(의원국외여비) : 국제회의, 자매결연 등 추가편성	399만원(4%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[인력운영비]

- 인건비(기타직보수) : 의정홍보팀 시간선택제(라급) ○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.	1,924만원(4.7%)
--	---------------

[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]

- 일반운영비(공공운영비) : 의전 · 업무용 차량유지비(유류대 및 수리비 등) (행사운영비)	△1,300만 4천 원(△27.52%) △2,200만원(△45.83%)
- 여비(국내여비) : 의정연수 등 수행경비 (국제화여비) : 의원 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	△660만원(△20%) △840만원(△20%)

- 일반보전금(행사실비지원금)	△330만원(△50%)
: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운영 지원	
- 시설비및부대비(시설비)	△3,696만원(△88.08%)
: 제10대 원 구성에 따른 의원실 환경정비	
- 자산취득비(자산및물품취득비)	△2,936만 4천원(△79.46%)
: 사무용 전산장비(PC, 모니터) 및 의자	
[기본경비]	
- 여비(국내여비) :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	△1,350만원(△35.71%)

4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- 202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포구 전체 예산액의 0.63%인 55억 40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3,110만원 7천원 대비 1.34%, 7,297만 5천원 증액된 규모임.
-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‘선진의회상 정립’ 사업 예산은 21억 76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2,291만 3천원보다 △1,521만 7천원 감액되었음. ‘행정운영경비’ 예산은 33억 9,638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819만 4천원보다 8,819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.

나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

- “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” 사업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 수행경비, 의회비, 일반보전금, 포상금, 연금부담금등, 시설비및부대비,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년 대비 6,126만 3천원(3.2%)

증액된 18억 5,457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.

- 인건비(속기 사무보조)는 전년 예산 대비 55만원, 0.27% 증액한 2,022만 8천원이 편성되었음.
-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13만 5천원, 2.03% 증액된 1억 5,792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.
 - 주요 증액 내역은 의원 수첩 제작(500만원), 방문 기념품(2,000만원), 행동강령자문위원회 등 수당(420만원), 경하기 사용료(720만원), 제10대 전반기 의장 경하기 · 근조기 제작(168만원), 제10대 의회개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구매(712만원) 등임.
- 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40만원(10.52%) 증액된 5,675만원을 편성하였음. 이는 국내의정연수 · 해외비교시찰의 직원 수행경비가 각 20%씩 감액된 반면, 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 신규편성으로 국제화여비 증액 편성(1500만원)에 의한 것임.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,869만 4천원 중 구의회사무국 업무활동 지원은 628만원으로 전년(1,108만원) 대비 △480만원 감액된 금액은 “의정활동 홍보 내실화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, 나머지 금액은 변동 없음.
-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인 대민 활동비로 전년 예산 대비 2.24%, 52만 5천원 증액된 2,4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, 이는 기존에 시간선택제 직원(7명) 누락 분이 반영된 것임.
-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‘2026년도 지방자치

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'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항목으로 구성됨.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원 국민연금·국민건강부담금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(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편성)로 전년도 예산 대비 3.21%, 4,531만 5천원 증액된 14억 5,629만 1천원이 편성되었음.

-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원의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의 수당을 편성한 것이며, 횟수를 절반(12회 → 6회)으로 줄여 전년도 예산 대비 △50%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음.
- 포상금은 직무유공 공무원(의회직 대상) 표창 부상품 및 정년, 명예퇴직 공무원의 근속위로경비와 격려금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20만원이 편성되었음.
- 연금부담금등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직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장애 항목으로 구성되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,200만원이 편성되었음.
-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,696만원(△88.08%) 감액하여 500만원을 제10대 원 구성에 따른 의원실 환경정비로 편성하였음.
-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태블릿PC(110만원)을 신규 편성하였으나, 내구연한 경과 자산의 교체 수요 감소 및 신규 구입 대상 물품 축소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△7,543만 3천원(△91.36%) 감액한 7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음.

- “국외 선진의회 연수” 사업은 일반운영비(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 참석수당)과 의회비(의원국외여비)로 구성됨. 이 중 의원국외여비에서 국제회의, 자매결연 등 추가편성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3.94%, 399만원 증액된 1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음.
- “의정활동 언론 홍보” 사업은 의정활동 관련 언론사 보도비용인 광고료의 홍보 횟수(60회 → 70회)를 확대함에 따라 550만원(16.67%) 증액한 3,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예산 편성목을 ‘일반운영비(사무 관리비)’에서 ‘자치단체등이전(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)’로 조정함.
- “의정활동 홍보 내실화” 사업은 신문 구독료 및 의회연보 제작,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구성됨.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.13%, 3,655만 6천원 증액한 1억 9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음.
 - 주요 증액 내역은 사무관리비(제10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 및 SPOT 광고 제작·송출비, 의회청사 간판 제작비, 촬영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), 공공운영비(의회 홈페이지 서버 OS 최신화), 시책추진업무추진비(의정활동 홍보 업무추진), 기타보상금(제10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), 자산및물품취득비(의정활동 홍보 태블릿PC 구입) 등임.
- “행정운영경비”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.
-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, 각종 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직급보조비,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

등으로 구성됨. 의회사무국 일반직(38명) 및 기타직(7명)을 기준으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홍보팀 시간선택제(라고급) 1명 증원으로 기타직보수 1,924만원 증액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.12%, 9,761만 9천원 증액된 32억 2,603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.

-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됨. 의회사무국 직원 45명 기준으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(출장여비)가 주된 감액(\triangle 1,350만원) 내역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\triangle 5.24%, \triangle 942만 7천원 감액된 1억 7,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음.

5. 검토의견

-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, 세출예산액은 55억 408만 2천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54억 3,110만원 7천원 대비 7,297만 5천원(1.34%) 증액 편성됨.
-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,
- 2026년에는 지방선거 이후 제10대 의회 전반기 개원(2026. 7.)이 예정되어 있어, 이에 따른 신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됨.
- 먼저, ‘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’ 사업의 경우, 전반기 원 구성 및 의장단 교체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(의원 수첩, 경하기 · 근조기, 명패 · 현황판 제작)가 편성되었으며, 신규 의원실 배정과 사무환경 조정 등을 위한 시설비(의원실 환경정비)가 반영됨. 또한, ‘의정활동 홍보 내실화’ 사업에서는 제10대 의회의 정체성과 출범 메시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(홍보동영상 제작, SPOT 광고 제작 및 송출)와 기타보

상금(제 10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)이 편성됨.

- ‘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’ 사무관리비 중 ‘방문 기념 품’은 전년 1,095만원 대비 905만원이 증액(82.65%)된 2,000만원이 편성됨. 이는 품목 다양화(보조배터리, 손선풍기)로 인한 수요 증가, 타 자치구의회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던 편성 금액,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진 점 등이 증액 사유로 제시됨. 다만, 방문 기념품은 공식적인 방문에 한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, 관련 지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급 요건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.
- ‘행동강령자문위원회 등 수당’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확대에 대비한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편성된 것으로, 동 위원회는 관련 법령 「공직자윤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에 따라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음. 2026년도 예산은 420만원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를 4회 → 6회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됨. 이는 2025. 9. 4.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비하여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을 겸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, 이에 따른 회의 개최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임.
- ‘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’는 2026년도 예산에 1,5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부 공무국외출장시 의회직원 포함 불가 방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별도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한 것임. 이는 의회사무국 전문성 강화 및 입법·감사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격년제

해외 선진 시책연수의 목적를 갖고 있음.

- 다만, 해외연수의 실효성과 주민 인식 문제속에서 예산편성은 되었으나, 내용·대상·시기·참석자 기준 등의 설명과 계획이 부족하고, 의회 예산편성권 부재속에서 복리후생·교육 관련 대부분이 집행부 협조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훈련계획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시됨.
- 따라서, 수년간 지방의원·의회사무국 해외출장이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연수계획의 구체화 및 연수결과보고서 공개, 해외연수를 대체할 국내 우수의회 견학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‘의정운영공통경비’는 1억 1,65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,152만원 (10.97%) 증액되었음. 이는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한 것으로, 2024년도에는 1억 500만원 전액 집행되어 집행률 100%, 2023년도에는 1억원 집행으로 집행률 95%를 기록하는 등 매년 예산이 거의 전액 집행되었음. 다만,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사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제한이 적은 경비인 만큼, 과다·임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집행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‘태블릿PC’는 ‘의정활동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’ 사업과 ‘의정활동 홍보 내실화’ 사업에서 각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대씩 편성되었음. 회의용 태블릿PC의 노후화 교체와 SNS 운영 및 현장 편집을 위한 홍보 업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각각 110만원, 119만 9천원이 반영된 것임.

- ‘의정활동 언론 홍보’ 은 최근 언론사 광고 게재 요청 증가에 따라 홍보 집행 횟수를 60회에서 70회로 10회 확대함으로써, 광고료가 전년 대비 550만원(16.67%) 증액된 3,850만원이 편성됨. 동 사업은 최근 2년 간 집행률이 100%로 전액 집행되는 등 의정활동 대외 홍보 수요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, 증액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‘의정활동 홍보내실화 사업’ 중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3.16%, 213만 9천원 증액된 1,839만 1천원이 편성되었음. 이는 ‘의회 홈페이지 서버 OS 최신화’ 가 신규 편성(259만 5천원)된 것이 증액 사유임.
- ‘인력운영비 중 보수’ 는 의회사무국 정원의 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, 직급보조비,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전년 대비 2.88%, 7,837만 9천원 증액된 27억 9,767만 8천원이 편성되었음.
- ‘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’ 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한시임기제의 기본연봉, 성과연봉, 수당, 연가보상비, 직급보조비, 보험료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년 대비 4.7%, 1,924만원이 인상된 4억 2,835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. 증액 사유로는 2025. 3. 1. 자 의정홍보팀 시간선택임기제(라급) 채용에 따른 보수를 편성한 것임.
-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,
- ‘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’ 중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△ 12.83%가 감액됨. 이는 직원의 의정연수 수행경비를 20% 감액(△120만원)한 데 따른 것임. 이는 최근 집행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, 2024년

도 집행률은 52%, 2023년은 29%에 그쳐 지속적인 낮은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진 결과임. 마찬가지로, 국제화 여비 중 직원의 해외의정연수 수행경비도 2024년 집행률 74%, 2023년 집행률 77%을 고려하여 20% 감액($\triangle 840$ 만원)함.

- ‘기본경비 중 국내여비’는 전년 대비 $\triangle 35.71\%$, $\triangle 1,350$ 만원을 감액한 2,430만원을 편성하였음. 이는 최근 집행 실적을 반영한 조정임. 실제로,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보면,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28% 정도였으며, 2023년도 역시 30%로 이번 예산안은 15% 비율 적용해 감편성함. 이러한 조정은 집행 실적에 근거한 타당한 감액으로 판단됨.
- 종합하면,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, 대체로 제10대 원 구성에 따른 개원 준비가 주요 증액 사유인 것을 알 수 있음.
-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의원국외여비, 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 4개 통계목으로 전년도 총액한도¹⁾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2026년도 의회 총액한도 3억 9,505만 1천원 대비 편성비율은 97.09%,
 -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,652만원
 -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,289만 3천원
 - 의원국외여비 1억 374만원
 - 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 3,040만원

1)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(산정방법) :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

총 3억 8,355만 3천원으로 산정범위 내 있음.

- 그동안 지방의회 독립과 제9대 의회 출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많았음. 한정된 예산으로 다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성목별 세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의정 활동 소요경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첫째, 의회 청사 시설 관련 예산은 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물품 교체 및 시설의 사후보수 측면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. 중장기적 계획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둘째, 의정활동 다양화로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 또한 강화해야 하므로 자기계발 및 전문·실무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탁교육훈련 계획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, 이와 더불어 사기진작 차원의 적극적인 복리후생 예산 마련을 위해 구청과 의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.
- 셋째, 선진의회 정립과 관련한 의원 및 직원의 공무상 국외연수비는 작년과 비교하여 현실물가를 반영한 계상이 이루어 짐. 다만,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지적²⁾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례적 연수계획이 아닌 국내외 학술 세미나와 포럼 등의 참석 목적이 있는 혁신적인 연수 계획이 필요해 보임.
- 참고로, 의원국외여비는 경비의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³⁾ 예산 삭감 등 제재 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

2) SBS 뉴스(2025.1.13.) '예산 낭비' 지적에…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리 강화

기준이 정립되어 있는바, 혁신적인 국외 연수 선진화 계획이 마련돼야 하겠음.

- 넷째,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,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.
-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, 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불가함.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 정책연구용역비로 발주 가능한데, 제한된 인원 속에서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면 소규모 용역이 발주되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한 용역 성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,
- 경쟁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권한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적으로 연구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선정되고 초당적인 인적 구성으로 연구단체가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- 이에 사무국에서는 구성요건과 주제 등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연구단체의 체계적 관리와 용역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지원 계획이 필요해 보임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6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전문위원	신 준 호
주무관	김 자 영

3) 이와 관련해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,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

(참고)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비고
1	의원 수첩 제작	사무관리비	5,000	
2	제10대 전반기 의장 경하기, 근조기 제작	사무관리비	1,680	
3	제10대 의회개원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구매	사무관리비	7,120	
4	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	국제화여비	15,000	
5	제10대 원 구성에 따른 의원실 환경정비	시설비	5,000	
6	회의용 태블릿 PC	자산및물품취득비	1,100	
7	제10대 전반기 홍보동영상 제작	사무관리비	22,000	
8	제10대 전반기 SPOT 광고 제작	사무관리비	11,000	
9	제10대 전반기 SPOT 광고 송출비	사무관리비	2,500	
10	의회청사 간판 제작비	사무관리비	2,500	
11	촬영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	사무관리비	1,728	
12	의회 홈페이지 서버 OS 최신화	공공운영비	2,595	
13	제10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	기타보상금	1,000	
14	의정활동 홍보 태블릿PC 구입	자산및물품취득비	1,199	

[관 계 법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2. 예산의 심의·확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36조(예산의 편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·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